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연월일 | 2025. . .<br>(제 회) |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
| 제출연월일 | 2025.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 등에 임용된 경우,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을 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657호, 2025. 1. 7. 개정,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한 승진 심사를 위해 순직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외부위원을 포함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인사혁신처 등 협의 예정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전투, 대(對)간첩작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2. 경찰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제37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37조제2항 이외의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있어 특별승진임용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2항 및 제4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규칙」 제18조제10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임명한 사람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인사·노무 또는 경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

서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특별승진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특별승진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특별승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특별승진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특별승진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6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 「공공 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에 전사 또는 순직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따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결정된 사람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생략)<br>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전투, 대(對)간첩작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 |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현행과 같음)<br>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대상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br>1. 전투, 대(對)간첩작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br>2. 경찰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 ③·④ (생략)<br>제40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①·② (생략)<br><신설>                                                                                                                                   | ③·④ (현행과 같음)<br>제40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경찰청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제37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
| 제41조(특별승진심사)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면 중                                                                                                                                    | 제41조(특별승진심사) ① -----<br>-----<br>-----                                                                                                                                                                                              |

양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 . 다만, 제37조제2항 이  
외의 사유로 -----  
-----  
-----  
-----  
----- .

②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있어 특별승진임용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규칙」 제18조제10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 <신 설>

② · ③ (생략)

### <신 설>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41조의2(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① 제15조에도 불  
구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른 특  
별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  
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공  
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중 경  
찰청장이 임명한 사람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  
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  
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인사·노무 또는 경찰 소관 업  
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  
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 ③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경찰청 인사담당관 |                  |
|-----------|------------------|
| 연 락 처     | (02) 3150 - 1219 |